

■ 한방 칼럼

독일 스포스도 'NEWKSNS'는 인체 통증 진단의 혁명인가

■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안전보호 신경시스템 "KSNS"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 들이는 중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신경 구조 덕분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이 신경 구조는 뇌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중력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신경구조를 최초로 발견한 고 김세연 선생님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신경들이 복합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근육을 명령하여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구조라하여 이를 "KOREANER KIM SICHERHEIT SCHUTZ NERVEN SYSTEM" 이라고 명명하고 약자로 "KSNS" 라 했다.

이는 병원체와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시스템과 함께 중력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무의식 신경 구조, 메카니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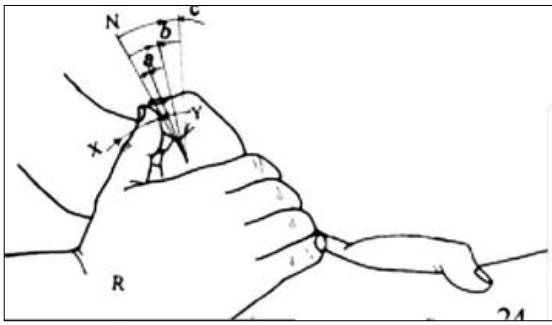
■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될 거 아닌가?

스포츠도는 인간이 가진 통증과 인체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스포스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스포스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여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 능력을 도와주는 본질을 중요시 한다. 스포스도를 하는 많은 한의사들이 여기에 매료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에서도 근본을 치료하는 본질을 중시한다.

“왜 나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겼습니까?”

“왜 이웃 사람은 50살에 병이 생겼습니까?”

“왜 나는 산에서 내려 갈 때 아프고 다른 사람은 올라갈 때 아프다고 할까?”



▲ 책 '새로 발견된 자연의학의 이론과 실습 K.S.S.' 199페이지 그림 S-6-24. 그림=BBHA 한의원 스포스도 센터

“왜 나는 다리에 물이 생겨서 붓고 다른 사람은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근육이 없어졌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무릎이 뜨겁고, 다른 사람은 차갑습니까?”

“왜 나는 발을 구부릴 때 아프고, 다른 사람은 펼 때 아프다고 합니까?”

“왜 나는 오른쪽 발바닥이 건조하고 건성 무좀이 생깁니까?”

“왜 나는 밤에 잘 때 오른 쪽 발에 쥐가 납니까?.....

스포츠도 치료사들은 끊임없이 원인을 찾는 질문 "why" 에서 시작해서 스포스(진단테스트)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 스포스(치료)를 해 나간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스포스와 스포스도 외에도 지금도 계속 새로운 스포스와 스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고 이 같은 방법은 통증을 원인을 찾아 내는 통증 진단의 혁명이 아니겠는가?

▶ 1346호에서 계속됩니다

김대환 원장 LAc
BBHA 한의원
스포츠도 센터
무료상담: (323) 852-2148
421 N. Brookhurst, #124
Anaheim, CA 92801



■ 부동산 칼럼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남가주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며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타인이 내 소유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고, 또한 소유할 의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몇 가지 요인이 충족됐을 때,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주들께 “당신의 부동산이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 분이 은퇴 후 날씨 좋은 남가주에서 골프도 즐기며 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이곳 남가주에 집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신 집을 빈집으로 놔 두느니 집 관리도 맡길 겸 잘 아는 지인에게 그 집에서 사실 수 있게 거주권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셔서 미국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 집에 관련된 부분을 맡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소유권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1. Open & Occupation: 공공연히 살고 있다.
2. Permission to Use: 거주하는 것이 묵인된 상태이다.
3. Uninterrupted possession for 5 years: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전혀 방해 받지않고 살았다(Vacant Land는 3년).
4. Property taxes for 5 years: 5년 동안 거주자가 세금보고를 마쳤다.
5. Under claim of right or color of title: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시는 집주인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집문서(Grant Deed) 등을 보여주며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계속 남기를 원한다면 Quiet Ti-

tle Action이라는 Court action으로 되거와 함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소유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점유자가 아닌, 먼저 등기가 되어 있었던 집주인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고, 소유권을 원하는 점유자가 등기를 해야하는 한국 사정에 비교해보면, 미국의 점유취득시효는 상당히 짧게 느껴지는게 광활한 땅의 크기가 반영된 역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효제도를 규정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 확보, 입증 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제재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소유자를 벌하고, 사회에 유익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온 점유자를 보호하며, 오래된 주장이나 증거는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적은 비용으로 확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점유로 발생하는 문제 중 세금보고와는 무관하나 Easement(남의 집의 일부분 사용, 특히 차 집입로 등)을 획득하는 Prescription이나, 부분적침범으로 획득하는 Encroachment도 있습니다. Encroachment은 옆집의 담이 나의 땅으로 넘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옆집의 땅이 되어버리는 경우인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므로, 집을 구입하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3년 내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손실을 막으셔야 합니다.

ANGIE KIM
REDPOINT REALTY
Honored Vice President
(714) 707-036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Certified Short Sale and Foreclosures Specialist (#190418)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313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